

## 종 법(宗法)

### 중앙종의회법(中央宗會法)

- 제1조** 종헌 제47조에 의하여 권한 조직 및 의사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중앙종회는 종헌 종법 제정 개정에 관하여 종정을 보좌하고 종단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헌 종법 제정 및 개정 단, 종회의원이 구성되지 아니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시는 종정의 특별지시로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헌 종법을 개정 공고할 수 있다.
  2. 총무원장 부원장 및 각원장 임명 동의
  3. 예산안 및 결산
  4. 총무원장 부원장 및 각원장 불신임 입안
  5. 종정 부종정의 해종 행위의 처벌 및 그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6. 기타 종헌 종법상 중앙종회에서 처리될 사항
- 제3조** 중앙종회의원은 직할시 및 도 총무원장은 겸직하게 되며 사찰수에 비례하여 종회의원 선출 의원회를 구성 종회의원을 선출하되 그 범위는 20개 사찰주지로 한다.
- 제4조** 종회의원은 총무원장 및 감찰원장과 동부서의 간부들은 겸직할 수 없다.
- 제5조** 자격 구비자가 미달시 종정의 인가를 받아 종회의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제6조** 의원이 사직하려고 할 때는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의원 결원이 생하였을 때는 총무원장은 소속 종무원으로 하여금 보선하도록 통고하여야 한다.
- 제8조** 종회에서 의결된 의결안은 15일 이내로 총무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9조** 종회의장은 종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의장유고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 회의는 정시 임시 2종으로 하고 정기회의는 12월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 의장특권으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 제11조** 중앙종회의원은 제4조를 제외하고는 타기관의 직무를 경우에 따라서 겸임할 수 있다.

제12조 각급 종회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1. 연령 40세 이상
2. 승랍 15년 이상
3. 법계 대덕 이상
4. 학력 고졸이상 또는 동등 학력자

제13조 다음 각호의 해당자는 각급 종회위원이 될 수 없다.

1. 징계를 받고 사면되지 않는 자.
2. 분한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자.
3. 수탈 법계의 징계를 받고 사면되지 않는 자.
4.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5. 기타 해중행위를 한 자로서 개과천선하지 않는 자.